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26일, 장종태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2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1.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1.22.)

상정, 축조심사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8.20.)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8.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장종태 의원)

현행법은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사용자가 특정 공간 안에서 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청각장애인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상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2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오세일)

개정안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로 하여금 특정 공간 안에서 보청기기 사용자가 주변 소음으로 청취에 어려움을 겪을 때 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제공하도록 하여 청각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취지임.

참고로, 보청기기 보조장비는 보청기 및 인공와우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이 공항이나 마트와 같이 사람이 많거나, 넓은 장소에서 청각 신호를 받아들이는데 도움을 주는 보조기구로, 방송 전파 강도 및 주

과수 조정을 통해 방송 정보와 음향 증폭 수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비임.

다만, 현행법령의 체계를 살펴보면, 장애인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해당 시설에 비치해야 하는 용품에 대해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포괄적으로 예시하고 있으며,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구체적인 종류에 관해서는 동 조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3]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령의 체계 및 비치용품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은 개정 수요 등을 고려하면,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직접 법률에 규정하기 보다는 하위법령(시행규칙 [별표3])에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수진)

부칙의 시행일을 조정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붙임]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8.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보청기기 보조장비 관련 하위 법령 개정 및 현장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조정함(안 부칙).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중 “6개월”을 “1년”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①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u>보청기기</u> ,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① ---- ----- ----- ----- ----- ----- <u>-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u> ----- ----- ----- ----- -----.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u>보청기기</u> ,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u>보청</u>	② ----- ----- ----- <u>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u> ----- ----- ----- ----- <u>보청기기</u>	② (개정안과 같음)

<u>기기</u>,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 갖추어 두어야 할 용품의 종류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u>보청기기</u>,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4. 제16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u>보청기기</u>, 장애인용	<u>및 보청기기 보조장비</u>----- ----- ----- -----. ③ ----- ----- -----<u>보청기기</u> <u>및</u> <u>보청기기 보조장비</u> ----- ----- ----- ----- -----. 제27조(과태료) ①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u>보청기</u> <u>기</u> <u>및</u> <u>보청기기</u>	③ (개정안과 같음) 제27조(과태료) ① (개정안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	---	---

쇼핑카트 등을 갖 추어 두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 항에 따른 시정명 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생 략) ② ~ ④ (생 략)	<u>보조장비</u>----- ----- ----- ----- ----- ----- -----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u>6개</u> <u>월</u>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5. (개정안과 같음) ② ~ ④ (개정안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u>1년</u> 이 경과한 날부터 시 행한다.
--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보청기기”를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청기기”를 각각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청기기”를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로 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중 “보청기기”를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①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u>보청기기</u> ,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 ----- ----- ----- <u>보청기기 및 보청기</u> <u>기 보조장비</u> ----- ----- ----- -----.
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u>보청기기</u> ,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u>보청기기</u> ,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 갖추어 두어야 할 용품의 종류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 ----- <u>보청기기 및 보청</u> <u>기기 보조장비</u> ----- ----- ----- ----- <u>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u> <u>조장비</u> ----- ----- -----.
③ 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u>보청기기</u> ,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할 수	③ ----- ----- <u>보청기기 및 보청</u> <u>기기 보조장비</u> ----- ----- -----

있다.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월채어, 점자 안내책자, <u>보청기기</u>,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생략) ② ~ ④ (생략)	-----. 제27조(과태료)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u>보청기기</u> 및 <u>보청기기 보조장비</u>----- ----- -----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